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 이행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제정안』

2026. 07. 21.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 제품
통보국	인도네시아	전년도 수출액 (천불)	6,993,854
작성기관	KOTITI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할랄제품보증법」 및 하위 규정에 따른 할랄제품보증(JPH)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JPH 이행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기준과 절차 표준화를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함
- (적용범위) HS 코드 - 전 제품*
 - * 인도네시아 시장 내 출시되는 할랄 제품에 해당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사업자, 할랄검사기관(LPH), 할랄심사원, PPH 지원 기관 및 지원인의 JPH 이행 위반 유형별 행정제재의 종류·부과 권한·절차, 이의신청 및 후속조치 등을 규정
- (인증 정보) 국내기관을 통한 교차인증 가능
 - (인증 절차) 신청 주체 지정 → SIHALAL 등록 신청 → 서류 제출 → BPJPH 검증 → 비용 납부 → 등록번호 발급
 - (유효기간) 유효기간 폐지, 사후감독 대응 필요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말레이시아) JAKIM 할랄인증제도에 따라 사업자의 할랄보증 시스템 운영, 정기·특별감사를 통한 인증 유지관리 체계를 운영
 - (싱가포르) MUIS 할랄인증제도 및 HalMQ에 따라 사업장별 할랄관리체계 구축, 정기심사 및 인증 유지관리 제도를 운영
 - (사우디아라비아) SFDA 및 SASO의 할랄인증제도에 따라 할랄 제품에 대한 인증관리, 시장감시 및 인증기관 관리체계를 운영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JPH 이행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및 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자 및 관련 기관은 인증·등록 유지와 행정제재 예방을 위한 내부 준법관리 및 문서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권고사항) ①적용 대상 여부 확인, ②JPH 운영체계 및 관련 문서 정비, ③할랄제품보증 관련 의무사항의 지속적인 준수 및 증빙 관리 등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준법관리 부담) 할랄제품보증(JPH) 이행 의무 위반 시 서면 경고, 행정벌금, 인증 취소 등 행정제재가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법령 준수와 내부 준법관리 체계 운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문서 및 증빙 관리 필요) 할랄제품보증(JPH) 운영 관련 문서와 증빙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제재 부과 시 시정조치 및 이의신청 등에 대비한 내부 문서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 (중소기업) SJPH 운영 및 감독 대응
 - － (중견기업) 할랄 관리체계 고도화
 - － (대기업) 통합 할랄 컴플라이언스 구축

목 차

요약문	1
I. 규제 개요	2
II. 규제 세부 내용	3
III. 관련 인증 정보	6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9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9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10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1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1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12
VI. 대응 방안	13
참고 1 참고자료	14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15

요 약 문

규 제 명	영문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Viol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Halal Product Assurance, Regulation No. 2 of 2026		
	국문	할랄 제품 보장 이행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규정 No. 2 (2026년)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인도네시아
채택(예정)일		2026.05.11	시행현황	제정 최종안
시행(예정)일		2026.06.05	통보일(고시일)	2026.06.05
HS Code		전 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
총 수출액 (천불)		683,525,430 (2025년 기준)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6,993,854 (2025년 기준)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 - BPJPH -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규제 목적	「할랄제품보증법」 및 하위 규정에 따른 할랄제품보증(JPH)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JPH 이행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기준과 절차 표준화를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함		
	주요 내용	사업자, 할랄검사기관(LPH), 할랄심사원, PPH 지원기관 및 지원인의 JPH 이행 위반 유형별 행정제재의 종류·부과권한·절차, 이의신청 및 후속조치 등을 규정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관련 기업은 「할랄제품보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할랄제품보증(JPH) 이행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문서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대응 여부	예상 기업 애로	JPH 이행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및 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자 및 관련 기관은 인증·등록 유지와 행정제재 예방을 위한 내부 준법관리 및 문서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대응 방안	①적용 대상 여부 확인, ②JPH 운영체계 및 관련 문서 정비, ③할랄 제품보증 관련 의무사항의 지속적인 준수 및 증빙 관리 등		

1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할랄제품보증법」 및 하위 규정에 따른 할랄제품보증(JPH)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JPH 이행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기준과 절차 표준화를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함

□ 규제 요지

- 사업자, 할랄검사기관(LPH), 할랄심사원, PPH 지원기관 및 지원인의 JPH 이행 위반 유형별 행정제재의 종류·부과권한·절차, 이의신청 및 후속조치 등을 규정

□ 적용대상

- (HS 코드: 전 제품) 할랄 제품*에 해당
*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공학 제품 및 착용·사용 또는 이용되는 물품 및/또는 서비스

□ 시행일

- 2026년 6월 5일

2

규제 세부 내용

□ 세부내용

○ 할랄제품보증(JPH) 이행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감독 대상	행정 제재
사업자	• 서면 경고 • 행정 벌금 • 할랄 인증서 취소 •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할랄검사기관(LPH)	• 서면 경고 • 행정 벌금 • 운영 정지 • LPH 인정(accreditation) 지위의 취소
할랄심사원	• 할랄심사원 등록번호 취소
할랄제품공정(PPH) 지원기관	• 서면 경고 • 등록번호 정지 • 등록번호 취소
할랄제품공정(PPH) 지원인	• 서면 경고 • 등록번호 정지 • 등록번호 취소

○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 사업자의 JPH 이행 위반 사유에 따른 행정제재

구분	이행 위반 사례	행정제재
a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단계별 시행기간을 경과하여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반입·유통·거래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서면 경고 • 유통제품 회수
b	할랄 인증 신청 시 정확하고, 명확하며,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 벌금 • 인증 취소
c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 간에 장소 및/또는 도축,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및 제공 장소를 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d	제품의 할랄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구분	이행 위반 사례	행정제재
e	BPJPH에 원재료의 구성 및/또는 PPH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서면 경고 • 행정 벌금 • 인증 취소 • 유통제품 회수
f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할랄 라벨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g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의 할랄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 벌금 • 인증 취소
h	원재료의 구성 및/또는 PPH에 변경이 있음에도 할랄 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i	PPH를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 서면 경고
j	금지된 원재료를 포함하는 제품에 "비할랄(not halal)"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행정 벌금 • 인증 취소
k	해외 할랄 인증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중·대기업) - 행정 벌금 - 유통제품 회수
l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번호를 할랄 라벨 인근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영세·소기업) - 서면 경고 - 행정 벌금 - 유통제품 회수
m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의 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서면 경고에 따른 후속 조치

구분	후속 조치	후속 조치 미이행 시
a	• 서면 경고를 받은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 후속조치 이행 필요	• 유통제품 회수
b~m	• 서면 경고를 받은 날부터 최대 14일 이내 후속조치 이행 필요	• 행정 벌금 • 유통제품 회수

－ 유통제품의 회수 제재가 결정된 사업자는 제재가 결정된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 제품 회수를 실시해야 함

○ 행정제재에 따른 이의신청

－ 사업자는 ①행정벌금, ②인증 취소, ③유통제품 회수의 제재에 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행정제재가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통해 제출해야 함

* 이의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신청인의 신원, ②이의 사유, ③결정된 행정제재, ④이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최대 2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으로 결정됨

○ 인증 취소 제품의 재신청

- 행정제재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할랄 인증서 발급을 재신청할 수 있음

3

관련 인증 정보

□ 인증 절차

- (일반인증) 인도네시아 할랄심사원의 국내 출장에 따른 체제비(항공비 및 숙박비 등)가 발생될 수 있음

연번	단계	주요 내용
1	신청 준비	• 사업자 정보, 제품명·종류, 원재료 목록, 제조공정, 할랄관리 책임자(Penyelia Halal), SJPH 관련 문서 등을 준비
2	SIHALAL 신청	• BPJPH의 SIHALAL 시스템을 통해 할랄인증을 신청하고 심사기관인 LPH를 선택
3	서류 확인 및 비용 납부	• BPJPH가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는 발급된 청구서에 따라 인증비용을 납부
4	할랄검사·시험	• 원재료, 제품, 생산시설 및 할랄제품공정(PPH)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료시험 실시
5	할랄성 결정	• LPH의 검사·시험 결과를 검토하여 제품의 할랄 여부 결정
6	인증서 발급	• 할랄성 결정 결과를 근거로 SIHALAL을 통해 전자 할랄 인증서를 발급
7	인증 후 관리	• 사업자는 할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할랄표시를 사용하며, BPJPH의 정기·수시 감독에 대응

- (교차인증) BPJPH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내 할랄 교차인증기관(LHLN)을 통해 해외 할랄인증서 등록(RSHLN) 가능

연번	단계	주요 내용
1	신청 주체 지정	• 인도네시아 수입자 또는 공식 대리인 지정
2	SIHALAL 등록 신청	• 수입자·대리인이 해외 할랄인증서 등록 메뉴를 통해 신청
3	서류 제출	• 위임·지정서, 수입자 NIB, 해외 할랄인증서 사본, 수입제품·HS코드 목록, 진위확인 선언서 등을 제출
4	BPJPH 검증	• BPJPH가 서류의 완전성·유효성 및 인증기관의 상호인정 범위를 확인
5	비용 납부	• 검증 통과 후 발급된 청구서에 따라 등록비 납부
6	등록번호 발급	• 전자서명 절차 후 해외 할랄인증서 등록번호 발급

□ 사후관리

- 본 감독 지침에 따라 BPJPH는 할랄인증 제품 및 사업자 등에 대해 정기·수시 감독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조치, 추가 감독 또는 관계기관 이첩 등의 조치를 수행함

□ 표시사항

-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할랄 라벨을 표시해야 함
* 할랄제품보증청 제145호(2022년) 및 이를 개정한 제88호(2023년)

구분	주요 내용
표시 대상	•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
표시 위치	• 제품 포장 또는 제품의 특정 위치에서 쉽게 확인하고 읽을 수 있는 위치
표시 형태	•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 또는 훼손되지 않는 형태로 표시
해외 상호인정 할랄 인증 제품 (교차인증)	• 인도네시아 할랄 라벨과 해외 할랄 인증 등록번호를 함께 표시, 또는 해외 할랄기관의 할랄 라벨을 함께 표시 가능* * BPJPH와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해외 할랄기관의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함
비할랄 제품	• 하람(Haram) 원료를 사용하거나 SJPH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비할랄 표시 적용

할랄 인증 라벨	할랄 인증 라벨(교차인증)
 	 

□ 신청 시 유의사항

- (인증 유효기간) 2023년 「할랄제품보증법」 개정에 따라 할랄 인증 유효기간이 폐지, 사후 감독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됨
- (서류 보존기간) 할랄인증 관련 신청서류, 원재료 및 생산공정 자료, 할랄제품보증시스템(SJPH) 운영기록, 감독 관련 문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보관하고, BPJPH의 정기·수시 감독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변경사항 발생 시) 원재료, 공급업체, 생산공정, 생산시설, 제품정보 또는 할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할랄 인증 갱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위반 시 제재) 시정조치, 추가 감독, 관계 법집행기관 이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적합성평가기관

- 인도네시아 할랄 심사 기관(해외 심사 가능)
 - LPPOM MUI, SUCOFINDO, SURVEYOR
- 국내 교차인증 기관(해외 심사 가능)
 - 한국할랄인증원(KHA), 한국이슬람중앙회(KMF), 비아이씨할랄코리아(BIC Halal Korea),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4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말레이시아

- (현행 규정) JAKIM 할랄인증제도에 따라 사업자의 할랄보증시스템 운영, 정기·특별감사, 할랄표시 관리 및 인증 유지관리 체계를 운영
- (도입동향) 인증 후 사업장의 할랄관리체계 운영, 원재료·생산공정의 할랄성 유지 여부 확인 및 위험 기반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현장 감사, 공급망 관리, 인증 갱신심사 및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추세

2

싱가포르

- (현행 규정) MUIS 할랄인증제도와 HalMQ(Halal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따라 사업장별 할랄관리체계 구축, 정기심사 및 인증 유지 관리 제도를 운영
- (도입동향) 인증기업의 내부 할랄관리체계 운영, 원재료 및 제조공정 변경관리, 정기 현장심사를 통한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식품 제조업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정기 감사, 불시점검, 인증 갱신심사 및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추세

- (현행 규정) SFDA 및 SASO의 할랄인증제도에 따라 수입 및 국내 유통 할랄제품에 대한 인증 관리, 시장감시 및 인증기관 관리체계를 운영
- (도입동향) 수입 할랄제품의 적합성 확인, 시장 유통제품 사후점검, 인증기관 관리 및 위반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육류, 식품,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 검사, 시장감시, 인증 유지심사 및 위반 시 인증 정지·취소 등 사후 관리 제도를 확대하는 추세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규정	할랄제품보증법, 정부령 No. 42/2024, BPJPH청장령 70/2025	Trade Descriptions Act 2011, MHCP, MHMS	AMLA, MUIS Halal Certification Conditions, HalMQ	Saudi Halal Regulation, SFDA Halal Food Regulations 등
주관기관	BPJPH	JAKIM	MUIS	SFDA / SASO
인증 의무	법정 의무 (품목별 단계적 확대)	자발적	자발적	일부 품목 및 수입제품 중심 의무
인증 대상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식품 및 외식업 중심	식품, 육류, 화장품 등
할랄 관리체계	SJPH(할랄제품보증 시스템) 구축 의무	MHMS 기반 내부 할랄관리체계 운영	HalMQ 구축·운영	할랄 요구사항 및 품질관리체계 운영
사후관리	정기감독 및 수시감독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정기심사 및 불시점검	시장감시 및 현장점검
유통제품 감독	BPJPH 시장감독 및 표시관리	JAKIM 시장 모니터링	MUIS 사후점검	SFDA 시장감시 및 수입검사
인증 유지요건	SJPH 운영 및 감독 결과 지속 적합성 유지	인증조건 지속 충족 및 감사 통과	HalMQ 운영 및 정기심사 통과	인증조건 유지 및 시장감시 적합
위반 시 조치	서면 경고, 행정 벌금, 인증 취소, 제품 회수	인증 정지·취소, 행정조치	인증 정지·취소	인증 정지·취소, 수입 제한, 제품 회수 등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정명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Viol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Halal Product Assurance, Regulation No. 2 of 2026
관리기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
법적근거	할랄제품보증법
주요목적	할랄제품보증(JPH)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결과
JPH 의무 준수	「할랄제품보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JPH 이행 의무를 준수해야 함
행정제재 및 시정조치 대응	JPH 이행 위반 시 경고, 행정벌금, 운영정지, 인증·등록 취소, 제품 회수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제재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이의신청 및 재신청	행정제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등록이 취소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음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할랄인증 제도의 실효성과 소비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정당함
비차별성	역내외 차별적 요소 없음
최소무역제한성	JPH 이행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무역 제한성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판단
투명성	BPJPH 청장령을 통해 JPH 이행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의 절차 등을 공개하여 관리체계의 예측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제고함

○ 경제성 분석(시나리오)

- (직접비용) 할랄제품보증(JPH) 이행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 준수, 기술·관리 문서 정비, 시정조치 이행 및 이의신청 대응 등에 따른 행정·운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간접비용) 인증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할랄제품보증(JPH) 관련 문서와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내부 준법관리 및 규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결론 및 권고 사항

- (준수사항) 관련 기업은 「할랄제품보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할랄 제품보증(JPH) 이행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문서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규제영향) JPH 이행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및 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사업자 및 관련 기관은 인증·등록 유지와 행정제재 예방을 위한 내부 준법관리 및 문서관리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권고사항) ①적용 대상 여부 확인, ②JPH 운영체계 및 관련 문서 정비, ③할랄제품보증 관련 의무사항의 지속적인 준수 및 증빙 관리 등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국내외 사업자 및 할랄인증 대상에 동일한 행정제재 기준을 적용하며, 특정 국가 또는 수입제품을 차별하는 규정은 없음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해당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 없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 없음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 기업	SJPH 운영 및 감독 대응	- 적용 대상 및 감독 절차 확인 - SJPH(할랄제품보증시스템) 운영체계 정비 - 원재료·생산공정 관련 문서 및 감독 대응자료 관리 - 정기·수시 감독 대응을 위한 기본 관리체계 마련
중견 기업	할랄 관리체계 고도화	- 원재료·공급업체 변경관리 체계 구축 - 내부 할랄관리 절차 및 자체점검 운영 -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개선 프로세스 마련 - 생산공정·공급망 전반의 할랄성 관리 강화
대기업	통합 할랄 컴플라이언스 구축	- 국내외 생산거점의 SJPH 및 할랄관리체계 통합 운영 - 공급망 전반의 할랄성 검증 및 내부 감사체계 구축 - 글로벌 할랄 인증·사후감독 대응 표준화 - 계열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관리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 참고자료

- 할랄제품보증법 (Undang-Undang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6 Tahun 2023)
- 할랄제품보증 시행에 관한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Nomor 42 Tahun 2024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Jaminan Produk Halal)
- 의약품, 생물학적 제품 및 의료기기의 할랄 인증에 관한 대통령령 (Peraturan Presiden Nomor 6 Tahun 2023 tentang Sertifikasi Halal Obat, Produk Biologi, dan Alat Kesehatan)
- 할랄제품보증청에 관한 대통령령 (Peraturan Presiden Nomor 153 Tahun 2024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 할랄제품보증청(BPJPH)의 조직 및 업무절차에 관한 할랄제품보증청장령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Nomor 1 Tahun 2025 tentang Organisasi dan Tata Kerja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 할랄제품보증 감독 지침 (Keputusan Kepala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Nomor 70 Tahun 2025 tentang Pedoman Pengawasan Jaminan Produk Halal)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할랄제품보증청 규정
2026년 제2호**

할랄제품보증 운영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에 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 할랄제품보증청장**

고려사항(Menimbang) :

- a. 국민이 소비하고 사용하는 제품의 할랄성에 대한 법적 확실성, 보호 및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부과를 통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
- b. 행정 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고 행정제재 부과에 있어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할랄제품 보증 운영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시행지침이 필요하다는 점;
- c. a 및 b에서 언급한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할랄제품보증 운영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에 관한 할랄제품보증청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련 법령(Mengingat) :

1. 「할랄제품보증법」(2014년 법률 제33호) (201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295호, 관보 부록 제5604호) 및 이를 개정한 「2022년 제2호 정부대행법률(일자리창출에 관한 정부대행법률)의 법률 확정에 관한 법률」(2023년 법률 제6호) (2023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41호, 관보 부록 제6856호)
2. 「할랄제품보증 분야의 운영에 관한 정부령」(2024년 제42호) (202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229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부록 제6998호);
3. 「의약품, 생물학적 제품 및 의료기기의 할랄 인증에 관한 대통령령」(2023년 제6호) (2023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14호);
4. 「할랄제품보증청에 관한 대통령령」(2024년 제153호) (202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349호);
5. 「할랄제품보증청의 조직 및 업무절차에 관한 할랄제품보증청 규정」(2024년 제1호) (2024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공보 제933호);
6. 「할랄 선언을 통한 할랄 인증에서의 소기업 및 영세기업 기준과 할랄제품 공정 지원 절차에 관한 할랄제품보증청 규정」(2025년 제5호) (202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공보 제931호);

결정한다(MEMUTUSKAN):

제정(Menetapkan): 할랄제품보증 운영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부과에 관한 할랄제품보증청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할랄제품보증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이하 BPJPH라 한다)이란, 할랄제품 보증 운영 분야의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비부처 정부기관을 말한다.
2. 할랄제품보증청장(Kepala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이하 청장(Kepala Badan)이라 한다)이란, 할랄제품보증 운영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할랄제품보증청의 장을 말한다.
3. 할랄제품보증(Jaminan Produk Halal)(이하 JPH라 한다)이란, 할랄 인증서로 입증되는 제품의 할랄성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말한다.
4. JPH 감독관(Pengawas JPH)이란, JPH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해 임명된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5. 제품(Produk)이란,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공학 제품 및 사회가 사용하거나 이용 또는 활용하는 소비재와 관련된 물품 및/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6. 할랄제품 공정(Proses Produk Halal)(이하 PPH라 한다)이란, 원재료의 조달,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및 제품의 제공을 포함하여 제품의 할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사업자(Pelaku Usaha)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 형태의 사업체를 말한다.
8. 할랄 인증서(Sertifikat Halal)란, 인도네시아 울라마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 인도네시아 아체 울라마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Ulama Aceh), 인도네시아 주(州) 울라마협의회, 인도네시아 군(郡)/시(市) 울라마협의회 또는 할랄제품 파트와위원회(Komite Fatwa Produk Halal)의 제품 할랄성에 대한 파트와(Fatwa)를 근거로 BPJPH가 발급하는 제품의 할랄성 인정서를 말한다.
9. 할랄검사기관(Lembaga Pemeriksa Halal)(이하 LPH라 한다)이란, 제품의 할랄성에 대한 검사 및/또는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할랄심사원(Auditor Halal)이란, 제품의 할랄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1. 할랄제품 공정 지원기관(Lembaga Pendamping Proses Produk Halal)(이하 PPH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란, 사업자의 할랄성 확인 및/또는 검증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PPH 지원인(Pendamping PPH)이란, 영세기업의 할랄 선언에 대한 검증 및 유효성 확인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할랄 라벨(Label Halal)이란, 제품의 할랄성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14. 근무일(Hari)이란, 중앙정부가 정한 근무일을 말한다.

제2장

행정제재 부과 권한

제2조

(1) BPJPH는 다음 각 호가 행한 JPH 운영 위반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 a. 사업자;
- b. LPH;
- c. 할랄심사원;
- d. PPH 지원기관; 또는
- e. PPH 지원인.

(2)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제재의 부과는 다음 각 호가 결정한다:

- a. 청장(Kepala Badan);
- b. JPH 지도 및 감독 분야의 중간관리 고위공무원(pejabat pimpinan tinggi madya); 및

c. JPH 감독 분야의 초급 고위공무원(pejabat pimpinan tinggi pratama).

제3조

- (1) 제2조 제(2)항 a에서 말하는 청장(Kepala Badan)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a. 행정제재의 부과를 결정한다; 그리고
 - b. 행정제재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근거로 행정제재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 (2) 제(1)항에서 말하는 청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a. 할랄 인증서의 취소;
 - b.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 c. LPH의 운영 정지;
 - d. PPH 지원기관의 업무 정지;
 - e. PPH 지원기관 등록번호의 취소;
 - f. 할랄심사원 등록번호의 취소; 그리고
 - g. LPH 인증(accreditation) 지위의 취소.
- (3) 제(2)항 a에서 말하는 할랄 인증서의 취소에는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번호의 취소가 포함된다.

제4조

- 제2조 제(2)항 b에서 말하는 JPH 지도 및 감독 분야의 중간관리 고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a. JPH 감독관 팀의 서면 경고 행정제재 부과 권고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 b. 행정벌금, 업무정지 및 PPH 지원기관 등록번호 취소의 형태인 행정제재의 부과를 결정한다.

제5조

제2조 제(2)항 c에서 말하는 JPH 감독 분야의 초급 고위공무원은 제4조에서 말하는 JPH 지도 및 감독 분야의 중간관리 고위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서면 경고의 형태인 행정제재의 부과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

- (1)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LPH에 부과된 행정제재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a. 행정벌금;
 - b. 할랄 인증서의 취소;
 - c. 사업자가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 d. LPH의 운영 또는 등록번호의 정지; 그리고/또는
 - e. LPH 인증(accreditation) 지위의 취소.
- (2) 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제재의 취소 또는 변경은, 행정제재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 (3) 제(2)항에서 말하는 이의신청의 사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a. JPH 감독의 수행이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b. JPH 감독관이 JPH 운영 위반에 대한 증거 또는 설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c. 행정제재 부과 권한이 없는 공무원에 의해 제재가 부과된 경우.
 - d. 행정제재의 부과를 경감시키거나 면제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또는
 - e. 불가항력(force majeure) 상태로 인하여 시정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장 행정제재

제1절 일반

제7조

- (1) 제2조 제(1)항 a에서 말하는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a. 서면 경고;
 - b. 행정벌금;
 - c. 할랄 인증서의 취소; 및/또는
 - d.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 (2) 제(1)항 c에서 말하는 할랄 인증서의 취소에는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번호의 취소가 포함된다.
- (3) 제2조 제(1)항 b에서 말하는 LPH에 대한 행정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a. 서면 경고;
 - b. 행정벌금;
 - c. 운영 정지; 및/또는
 - d. LPH 인증(accreditation) 지위의 취소.
- (4) 제2조 제(1)항 c에서 말하는 할랄심사원에 대한 행정제재는 할랄심사원 등록번호의 취소의 형태로 한다.
- (5) 제2조 제(1)항 d에서 말하는 PPH 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a. 서면 경고;
 - b. 등록번호의 정지; 및/또는
 - c. 등록번호의 취소.
- (6) 제2조 제(1)항 e에서 말하는 PPH 지원인에 대한 행정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a. 서면 경고;
 - b. 등록번호의 정지; 및/또는
 - c. 등록번호의 취소.

제8조

- (1) 제7조 제(1)항 a에서 말하는 서면 경고의 형태인 행정제재는 서면 경고의 형식으로 부과한다.
- (2) 제(1)항에서 말하는 서면 경고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JPH 위반자의 신원;
 - b. JPH 위반자의 주소;
 - c. 위반의 종류;
 - d. 위반에 대한 설명;
 - e. 위반의 결과;
 - f. 후속 조치 완료 기한; 그리고
 - g. 발급일.
- (3) 서면 경고는 발급일부터 늦어도 1(일) 근무일 이내에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전달한다.

제9조

- (1) 제7조 제(1)항 c에서 말하는 할랄 인증서 취소의 형태인 행정제재는 청장의 결정의 형식으로 부과한다.

- (2) 제(1)항에서 말하는 결정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사업자의 신원;
 - b. 사업자의 주소;
 - c. 할랄 인증서 번호;
 - d. 제품의 종류;
 - e. 제품명;
 - f. 위반의 종류; 그리고
 - g. 취소일.
- (3) 청장의 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늦어도 5 근무일 이내에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 (4) 할랄 인증서의 취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 a. 할랄 인증서에 기재된 일부 제품; 또는
 - b. 할랄 인증서에 기재된 모든 제품.

제10조

- (1) 제7조 제(1)항 d에서 말하는 유통 중인 제품 회수의 형태인 행정제재는 청장의 결정의 형식으로 부과한다.
- (2) 제(1)항에서 말하는 결정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사업자의 신원;
 - b. 사업자의 주소;
 - c. 할랄 인증서 번호;
 - d. 제품의 종류;
 - e. 제품명; 그리고
 - f. 제품 회수 기한.
- (3) 청장의 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늦어도 5 근무일 이내에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전달한다.

제11조

제10조에서 말하는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 부처/기관과 협조하는 BPJPH의 감독 아래 사업자가 수행한다.

제12조

- (1) 제7조에서 말하는 운영 정지 또는 등록번호 정지의 형태인 행정제재는 청장의 결정의 형식으로 부과한다.
- (2) 제(1)항에서 말하는 결정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LPH, PPH 지원기관 또는 PPH 지원인의 명칭;
 - b. LPH, PPH 지원기관 또는 PPH 지원인의 주소;
 - c. LPH, PPH 지원기관 또는 PPH 지원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 d. 운영 정지 또는 등록번호 정지 기간.
- (3) 청장의 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늦어도 5 근무일 이내에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LPH, PPH 지원기관 또는 PPH 지원인에게 전달한다.

제13조

- (1)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운영 정지 또는 등록번호 정지는 최장 6개월의 기간 동안 실시한다.

- (2) 제(1)항에서 말하는 운영 정지 또는 등록번호 정지 기간 동안, BPJPH는 발생한 위반사항의 시정 결과에 대한 지원의 형태로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

- (1) 제7조에서 말하는 등록번호 취소의 형태인 행정제재는 청장의 결정의 형식으로 부과한다.
- (2) 제(1)항에서 말하는 결정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할랄심사원, PPH 지원인, LPH, PPH 지원기관 또는 사업자의 명칭;
 - b. 등록번호;
- (3) 청장의 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늦어도 5 근무일 이내에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방식으로 LPH, PPH 지원기관, 사업자, 할랄심사원 또는 PPH 지원인에게 전달한다.

제15조

제7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록번호 취소의 형태인 행정제재를 받은 할랄심사원은 재등록할 수 없다.

제16조

제7조에서 말하는 행정벌금의 형태인 행정제재에 대한 위반의 종류 및 제재 해결 절차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절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제1관

사업자의 JPH 운영 위반의 종류

제17조

사업자의 JPH 운영 위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a.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단계별 시행기간을 경과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반입·유통·거래되는 제품에 대하여 할랄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b. 할랄 인증 신청 시 정확하고, 명확하며,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c.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 간에 장소 및/또는 도축,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및 제공 장소를 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 d. 제품의 할랄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e. 원재료의 구성 및/또는 PPH의 변경을 BPJPH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f.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할랄 라벨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g.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의 할랄성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h. 원재료의 구성 및/또는 PPH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할랄 인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 i. PPH를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 j. 금지된 원재료를 포함하는 제품에 "비할랄(not halal)"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k. 해외 할랄 인증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l.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번호를 할랄 라벨 인근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또는
- m.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의 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부과

제18조

- (1) 제17조 a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서면 경고 및/또는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의 형태로 한다.
- (2) 할랄 인증서를 보유하고 제17조 b, c, d, g, h 및 j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행정벌금 및/또는 할랄 인증서 취소의 형태로 한다.
- (3) 제17조 e 및 f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 a. 서면 경고;
 - b. 행정벌금;
 - c. 할랄 인증서 취소; 그리고
 - d.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 (4) 제17조 e에서 말하는 위반이 제품의 할랄성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제재는 할랄 인증서 취소 및/또는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의 형태로 한다.
- (5) 제17조 i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서면 경고의 형태로 한다.
- (6) 제17조 k, l 및 m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중기업 및 대기업 규모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행정벌금 및/또는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의 형태로 한다.
- (7) 제17조 k, l 및 m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영세기업 및 소기업 규모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 a. 서면 경고;
 - b. 행정벌금; 그리고
 - c.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 (8) 제(2), 제(4) 및 제(6)항에서 말하는 행정제재의 부과는 먼저 서면 경고의 형태로 실시한다.

제19조

- (1) 서면 경고의 형태인 행정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의 기간 내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a. 제17조 a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사업자의 경우 최대 30일;
 - b. 제17조 b부터 m까지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사업자의 경우, 서면 경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 (2) 사업자가 제(1)항 a에서 말하는 기간 내에 서면 경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BPJPH는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에 관한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 (3) 사업자가 제(1)항 b에서 말하는 기간 내에 서면 경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BPJPH는 행정벌금 및/또는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에 관한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제20조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간 내에 서면 경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BPJPH는 전자매체, 소셜미디어, 인쇄매체 및/또는 스티커 부착을 통한 정보 공개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

사업자에게는 제18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말하는 할랄 인증서 취소의 형태인 행정제재와 함께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에 관한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제22조

- (1) 제18조 제(5)항에서 말하는 서면 경고의 형태인 제재가 부과된 경우, 사업자는 개선에 관한 설명이

표시될 때까지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서 말하는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는 즉석에서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 제품과 서비스 제품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일시적 폐쇄와 함께 스티커, 현수막 및/또는 그 밖의 수단을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3) BPJPH는 제(1)항에서 말하는 서면 경고 제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2일 이내에 전자매체, 소셜 미디어 및/또는 인쇄매체를 통하여 해당 제품을 국민에게 공표한다.

제23조

- (1) 사업자에 의한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는 유통 중인 제품 회수 제재가 결정된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2) 사업자가 제(1)항에서 말하는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BPJPH는 관계 부처/기관과 협조하여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를 실시한다.

제3관

할랄 선언(Pemnyataan Halal)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부과

제24조

- (1) 제17조 a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할랄 선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서면 경고의 형태로 한다.
- (2) 제17조 b부터 j까지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할랄 선언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 a. 서면 경고;
 - b. 행정벌금; 그리고
 - c. 할랄 인증서의 취소.

제3절

LPH 및 할랄심사원에 대한 행정제재

제1관

LPH에 대한 행정제재의 부과

제25조

LPH의 JPH 운영 위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a. 검사 및/또는 시험 결과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실제 상태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할랄성 검사 및/또는 시험 문서와 비용을 검사 및/또는 시험 결과가 제출기한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BPJPH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b. JPH 운영 서비스 통합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c. BPJPH에 데이터 변경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d.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시설에서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e. LPH 인증(accreditation) 인증범위 및 활동범위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f. 할랄성 검사를 수행하는 할랄심사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g. 배정된 할랄심사원의 학력 자격이 할랄성 검사 대상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h. LPH의 역량 범위와 동일한 범위를 보유하거나 협력하는 시험실의 시험 범위가 LPH의 역량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i. LPH가 수행하는 할랄성 검사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 샤리아(이슬람법) 인적자원을 참여시키지

- 아니한 경우;
- j.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및/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의 할랄성 검사 및/또는 시험 외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 k. 할랄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1년 동안 사업자에 대한 제품의 할랄성 검사 및/또는 시험을 최소 10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 l.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할랄성 검사 및/또는 시험 비용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 (1) 제25조 a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LPH에 대한 행정제재는 서면 경고, 행정벌금 및/또는 운영 정지의 형태로 한다.
- (2) 제25조 b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LPH에 대한 행정제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한다.
 - a. 서면 경고;
 - b. 행정벌금; 및/또는
 - c. 운영 정지.
- (3) 제25조 c부터 f까지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LPH에 대한 행정제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 a. 서면 경고; 그리고
 - b. 운영 정지.
-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서 말하는 서면 경고의 형태인 행정제재를 받은 LPH는 14일 이내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5) 제25조 a부터 f까지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LPH에 대한 행정제재는 운영 정지의 형태로 한다.
- (6) 제25조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LPH에 대한 행정제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LPH 인증 체계를 통하여 인증 지위의 취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2관

할랄심사원에 대한 행정제재의 부과

제27조

할랄심사원의 JPH 운영 위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a. 할랄심사원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더 이상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b.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 c.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로 선고된 경우;
- d. 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재료를 검사 및 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 e. 제품의 가공공정을 검사 및 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 f. 도축 시스템을 검사 및 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 g. 제품의 위치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
- h. 생산설비, 생산공간 및 저장시설을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
- i. 제품의 유통 및 제공을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 j. 사업자의 할랄보증시스템을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
- k. 검사 및/또는 시험 결과를 LPH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l.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및/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의 할랄성 검사 및/또는 시험 외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및/또는
- m. 할랄심사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JPH 운영과 관련하여 사기, 부정행위 또는 그 밖의 위반행위를 수행한 경우.

제28조

제27조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할랄심사원에 대한 행정제재는 등록번호 취소의 형태로 한다.

제4절

PPH 지원기관 및 PPH 지원인에 대한 행정제재

제29조

PPH 지원기관의 JPH 운영 위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a. PPH 지원인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 b. PPH 지원인을 임명 및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 c. PPH 지원인에 대한 지도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d. PPH 지원 업무성과 보고서를 BPJPH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e. 영세기업 및 소기업 사업자가 할랄 인증을 신청한 날부터 최대 10(십)일 이내에 PPH 지원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f. PPH 지원 과정에서 영세기업 및 소기업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기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및/또는
- g. PPH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1(일)년 동안 PPH 지원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 (1) 제29조 a부터 g까지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PPH 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제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한다:
 - a. 서면 경고;
 - b. 등록번호의 정지; 및/또는
 - c. 등록번호의 취소.
- (2) 제(1)항 a에서 말하는 서면 경고는 제1차 서면 경고부터 제2차 서면 경고까지의 형태로 부과한다.
- (3) 제(2)항에서 말하는 서면 경고의 형태인 행정제재를 받은 PPH 지원기관은 14일 이내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4) 제(1)항 b에서 말하는 등록번호의 정지에는 운영 정지가 포함된다.
- (5) 동일한 위반을 반복한 PPH 지원기관은 제(2)항에서 말하는 서면 경고 제재와 등록번호의 정지 제재를 부과한다.
- (6) 제29조 e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PPH 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제재는 서면 경고 및 운영 정지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 (7) 제29조 f 및 g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PPH 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제재는 등록번호의 취소의 형태로 한다.

제31조

- (1) PPH 지원인의 JPH 운영 위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a. PPH 지원 업무를 성실하고, 정직하며, 공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b.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세기업 및 소기업 사업자의 할랄 선언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c. PPH 지원인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 d. PPH 지원 결과 보고서를 BPJPH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e. 영세기업 및 소기업 사업자가 할랄 인증을 신청한 날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PPH 지원을 완료

- 하지 아니한 경우;
 - f. PPH 지원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g. PPH 지원인으로서의 직무 위반을 한 경우;
 - h. 1년 동안 PPH 지원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및/또는
 - i. PPH 지원 과정 중 및 지원이 완료된 이후에도 영세기업 및 소기업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 a부터 e까지에서 말하는 위반에는 이해충돌을 초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3) 제(1)항 g에서 말하는 위반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a. JPH 감독 결과의 증빙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PPH 지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b. PPH 지원인으로서의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 c. PPH 지원 사진을 위조한 경우; 및/또는
 - d. 사업자의 할랄 인증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불법 징수, 사례금 수수 및/또는 서류 위조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2조

- (1) 제31조 제(1)항 a부터 e까지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PPH 지원인에 대한 행정제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한다:
- a. 서면 경고; 및/또는
 - b. 등록번호의 정지.
- (2) 제(1)항 a에서 말하는 서면 경고의 형태인 행정제재를 받은 PPH 지원인은 14일 이내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3) 제31조 제(1)항 f부터 i까지 및 제(3)항에서 말하는 위반을 한 PPH 지원인에 대한 행정제재는 등록번호의 취소의 형태로 한다.

제33조

제30조 제(4)항, 제31조 제(1)항 c 및 제32조 제(3)항에서 말하는 행정제재는 JPH 지도 분야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단위가 실시한 PPH 지원인 및 PPH 지원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근거로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제재 부과 절차

제34조

- (1) BPJPH는 JPH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 (2) JPH 감독은 BPJPH, 관계 부처/기관 및/또는 주(州)/군(郡)/시(市) 지방정부의 JPH 감독관이 수행한다.

제35조

- (1) 제34조 제(2)항에서 말하는 JPH 감독관은 JPH 감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제(1)항에서 말하는 감독 결과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요약보고(Executive Summary);
 - b. 일반 개요;
 - c. 감독 결과;
 - d. 권고사항; 그리고

- e. 증빙자료 첨부.
- (3) 제(1)항에서 말하는 BPJPH JPH 감독관이 작성한 JPH 감독 결과 보고서는 JPH 감독 분야의 초급 고위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4) 제(1)항에서 말하는 관계 부처/기관 및/또는 주(州)/군(郡)/시(市) 지방정부의 JPH 감독관이 작성한 JPH 감독 결과 보고서는 JPH 감독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하여 청장에게 제출한다.
- (5) 제(4)항에서 말하는 JPH 감독 결과 보고서에 검토가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 청장은 JPH 감독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통하여 검증 및 확인을 실시한다.

제36조

청장, 중간관리 고위공무원 및 초급 고위공무원은 각각의 권한에 따라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JPH 감독관의 감독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행정제재의 부과를 결정한다.

제37조

- (1) 제36조에서 말하는 행정제재 부과 결정은 그 권한에 따라 JPH 감독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제재를 받는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 (2) 권한에 따라 JPH 감독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JPH 감독 업무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행정제재 부과 결정을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신청

제38조

- (1) 행정제재를 받은 사업자 또는 LPH는 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제(1)항에서 말하는 이의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장은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제(2)항에서 말하는 이의심사위원회는 홀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5명으로 한다.
- (4) 제(3)항에서 말하는 이의심사위원회는 이의를 제기한 사업자 또는 LPH와 이해충돌이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 (1) 사업자가 제기하는 이의는 다음 각 호의 행정제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a. 행정벌금;
 - b. 할랄 인증서의 취소; 및/또는
 - c. 사업자의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 (2) LPH가 제기하는 이의는 다음 각 호의 행정제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a. 운영 정지; 및/또는
 - b. LPH 인증(accreditation) 지위의 취소.
- (3) 이의신청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의신청서의 형태로 제출한다.
 - a. 신청인의 신원;
 - b. 이의 사유;
 - c. 신청하는 결정; 그리고
 - d. 이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
- (4) 제(3)항 d에서 말하는 이의 사유를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는 JPH 감독 후속조치 점검 문서일 수 있다.

제40조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의는 행정제재가 결정된 날부터 최대 5(오)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 (1) 제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의심사위원회는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한다.
- (2)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최대 2(이)일 이내에 실시한다.
- (3) 이의신청 심사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a. 인용 권고; 또는
 - b.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권고.
- (4) 이의심사위원회는 심사 완료일부부터 최대 1(일)일 이내에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청장에게 제출한다.
- (5) 청장은 심사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최대 1(일)일 이내에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 (6)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a.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또는
 - b.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 (7) 제(6)항 a에서 말하는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청장은 행정제재 부과 변경 결정을 발급한다.
- (8) 제(6)항 b에서 말하는 행정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청장은 통지서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한다.

제6장

행정제재 부과 후속조치

제42조

행정제재 부과 후속조치는 JPH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점검 문서를 작성하여 실시한다.

제43조

BPJPH는 제42조에서 말하는 행정제재 부과 후속조치를 점검한다.

제7장

기타 규정

제44조

사업자는 할랄 인증서 취소 제재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할랄 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장

종결 규정

제45조

JPH 운영에 대한 행정제재의 부과를 규정하는 법령은 이 규정의 행정제재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제46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